
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교육부장관·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거나, 학습지원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(안 제7조제2항 신설 등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세 진)